

[일련번호 : 30]

양 천 구 시 정 요 구

제 목 공공요금 납부 지연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에 따라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3조(지출 및 지급의 원칙)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[별표 2]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는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2023년 1월, 3월, 2024년 1월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면서, 납기일에 지출하지 못하여 고지서 상 연체료가 발생하였고, 그 연체료를 세출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연체료 발생 내역

연번	지출품의일	건명	지출금액(원)	고지서상 연체금액(원)	비고
1	2023-02-07	2023년 1월 및 2월 도시가스 요금납부	3,239,560	1층 :9,907 3층 :90	
2	2023-03-03	2023년 3월 도시가스 요금납부	1,748,330	1층 :32,594 3층 :124	
3	2024-01-10	2024년 1월 도시가스 요금납부(1층)	684,530	508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세출예산으로 납부한 공공요금 납부지연 연체료 총 43,223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, 공공요금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